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1
----------	--------

제출년월일 : 2020.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 구 하천 이용객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내 하천 일대의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관내 하천(불광천·홍제천·향동천) 금연구역 지정 위한 근거 마련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9항(금연구역 지정 관리)
- 2)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0. 10. 15. ~ 11. 4.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해당없음

- 3) 기획예산과의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원안 의결
-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 5) 제2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0. 11.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일대의 보행자길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6.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일대의 보행자길</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제2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안내판 및 현수막 제작·설치 등 홍보를 위한 비용이 예상되나 그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4. 작성자 : 보건소 건강증진과 김경연 (☎ 3153-9053)